

# 『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용어를 재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규제를 자체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명시(안 제4조, 안 제10조)
- 용어 재정비(안 제10조의2)
- 위탁 취소 범위 중 불명확한 내용 삭제(안 제14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T/F팀과 합의됨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수정, 삭제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와 안 제10조 및 안 제10조의2에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추가 및 용어의 재정비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 위탁 운영의 철회 범위 중 내용이 불명확한 제5호 (“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)를 삭제하였음.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수정, 삭제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